

# 예 산 총 칙

2015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| 1,455,659,748 | 43,669,792 |
| 일반회계       | 1,241,236,122 | 37,237,084 |
| 특별회계       | 214,423,626   | 6,432,709 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| 164,723,689   | 4,941,711 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| 78,951,942    | 2,368,558 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| 85,771,747    | 2,573,152  |
| 기타특별회계     | 49,699,937    | 1,490,998 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  | 48,472        | 1,454      |
|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| 7,490,632     | 224,719    |
|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| 704,000       | 21,120     |
|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| 20,753,720    | 622,612    |
| 교통사업특별회계   | 17,084,215    | 512,526    |
| 대지보상특별회계   | 1,036,000     | 31,080    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  | 2,582,898     | 77,487     |

제 2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『세입·세출 예산』 과 같다.

제 3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『해당없음』 으로 한다.

제 4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『해당없음』 으로 한다.

제 5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『해당없음』 으로 한다.

제 6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『 9,545,549천원』 으로 한다.

제 7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『해당없음』 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『총액인건비』 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